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92호
------	-------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건 소 장
제출연월일	2022. 11. 14.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92호
----------	-------

제출연월일 : 2022. 11.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증진과장

1. 개정이유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건강도시 조성사업 기본 방향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논산시 소속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1조)

- 위원의 임기 규정(2년 임기, 1회 연임)을 폐지하고자 함

나.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안건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5)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를 “시장 또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을 “구성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건강증진과장	이 혜 란
	건강정책팀장	이 규 화
	담 당 자	박 해 연 (746-805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 ----- <u>구성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 구성) <신설></p> <p>① ~ ⑥ (생략)</p>	<p>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u>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② ~ ⑦ (현행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제11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u>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u></p>
<p>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u>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u>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u>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u></p>	<p>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 <u>시장 또는</u>----- ----- -----.</p> <p>② ----- <u>구성위원</u> -----</p>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12. 22.]